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 추가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68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 동물 추가	2
※ 참고자료	6
1.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	6
2. 유해야생동물 지정 현황	7
3. 생태계교란 생물 등 지정 현황	8

I. 제안경위

2025년 8월 14일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은 2025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의 목적에 위해가 되는 유해야생동물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정의함에 따라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에 방점을 두고 있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태학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생태계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Ⅲ. 검토의견

1.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 추가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5. ----- ----- <u>주거나</u> <u>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u> ----- -----.
6. ~ 11.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유해야생동물’로 정의하면서¹⁾, 유해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취소,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²⁾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임.³⁾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정의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정의함에 따라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태학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

같다.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참고자료 1. 유해야생동물 지정제도>

<참고자료 2. 유해야생동물 지정 현황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

4) <제안이유 중 일부>

(...) 유해야생동물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정의함에 따라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에 방점을 두고 있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태학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이하 생략)

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생태계 균형 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⁵⁾,

개정안과 같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해야생동물 정의에 ‘생태계교란’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종에 대한 이중 규제 또는 관리체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할 수 있다.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요건⁶⁾ 및 관리 방법]

구분	지정 요건	관리 방법
유해야생동물	① 산·들·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② 위① 중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	지자체장의 포획* 및 관리 (*포획: 총기 포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야생화된 동물	①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이나 반려동물 ② 위①로 인해 생태계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지자체장의 포획* 및 관리 (*포획방법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생태계교란생물	① 유입주의생물·외래생물 중 생태계 균형 교란 생물 ② 위①이외 생물 중 특정지역에서 생태계 균형 교란 생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방제* 요청 (*살충, 제거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생태계위해우려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 줄 우려	생태계교란생물과 동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문 의 처

02)6788-5541

6) <참고자료 3. 생태계교란 생물 등 지정 현황>

※ 참고자료

1.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

□ 목 적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구제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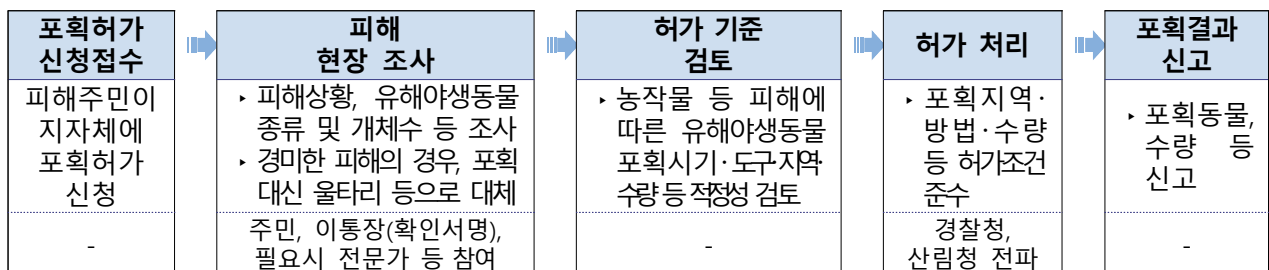
□ 추진 경과

- (’84.7, 산림청)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유해조수 최초 정의 및 고시(산림청 고시제5호, 11종)
 - * 농작물·과수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큰부리까마귀 제외) 등
- (’94.6, 산림청) 유해조수 고시(산림청 고시 제1994-9호, 13종)
- (’00.9, 환경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유해조수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토록 개정(환경부고시 제2000-116호, 13종)
 - *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항목) 추가
- (’05.2,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유해야생동물 규정(별표3, 15종)
 - * 어치, 직박구리, 갈까마귀, 떼까마귀(4종) 추가 및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항목) 추가, 다람쥐 및 들고양이(2종) 삭제
- (~’23.12, 기후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 18종
 - * 집비둘기, 큰부리까마귀, 민물가마우지(3종) 추가

□ 포획 허가

-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가 기초 지자체의 장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서(가해동물명, 피해대상, 피해정도, 피해금액 등 기재) 제출
 - 지자체장이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등을 조사 후 유해야생동물 포획 외에 다른 피해 방지방법이 없거나 실행이 곤란할 경우 허가증 발급 ※ 대리포획, 수확기피해방지단은 수렵면허 보유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절차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2. 유해야생동물의 지정 현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카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카마귀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8.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낙시터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

3. 생태계교란 생물 등 지정 현황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현황(1속 39종)

'98	'99	'01	'02	'09	'13	'16	'18	'19	'20	'21	'22	'23	'24
3종	2종	1속	4종	6종	2종	2종	1종	3종	10종	1종	2종	1종	2종

구 분	생태계교란 생물
'98	황소개구리, 블루길, 배스(3종)
'99	돼지풀, 단풍잎돼지풀(2종)
'01	붉은귀거북속 전종(1속)
'02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4종)
'09	뉴트리아, 애기수영,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6종)
'13	꽃매미, 가시상추(2종)
'16	갯줄풀, 영국갯끈풀(2종)
'18	붉은불개미(1종)
'19	등검은말벌, 환삼덩굴, 미국가재(3종)
'20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 아르헨티나개미,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빛살무늬미주메뚜기(10종)
'21	브라운송어(1종)
'22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2종)
'23	열대불개미(1종)
'24	열대긴수염개미, 물여뀌바늘(2종)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현황(4종)

지정일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20	라쿤(1종)
'21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피라냐(3종)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